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상훈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1433호

다. 제출일자 : 2016. 10. 31.

라. 회부일자 : 2016. 11. 3.

2. 제안사유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에 놓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위법령 개정안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나.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안 별표1 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1. 8 ~ 1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개정으로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¹⁾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법에서는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²⁾을 두고 위반시 벌칙³⁾을 부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과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19일에 법이 일부 개정되었음

※ 참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개정 2016.1.19. / 시행일 : 2016.1.19〉

- 동 개정조례안은 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레커차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 조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10~20만원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금액이 과다할 경우 파파라치 양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과소할 경우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 필요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상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임